

(國) (內) (事) (件)

國
內
外
審
判
事
例

△ 調
查
部
▽

<25>

權 利 範 圍 確 認

〈大法院 第1部 判決〉(1977. 12. 13)

裁判長：大法院 判事 유 태 흥

開與判事：“ ” 이 영 섭, 김 윤 행, 김 용 철

1. 事件 : 74후 33 權判範圍確認
2. 審判請求(被上告人) : 同和藥品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 金 泓 基
訴訟代理人 辯護士 조 구 호, 辩理士 전 춘 향
3. 審判請求人(上告人) : 스위스國 에프호프만 라롯슈株式會社
代表 커트 네셀보조
訴訟代理人 辯護士 이 명 호
4. 原審決 : 特許局 1974. 6. 19. 字 72 抗告審判 第125號審決
5. 主 文 : 이 上告를棄却한다. 上告費用은 上告인의 負擔으로 한다.
6. 理 由

被審判請求人 訴訟代理人의 上告
理由)補充上告理由에 포함된 範圍
내에서)를 判斷한다.

特許에 있어서 公知公用의 事由
까지 포함된 出願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登錄이 있었다고 하여도 新規
性있는 技術的 效果發生에 有機的
으로 結合된 것으로 볼수 없는 공
지공용의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그
權利範圍를 確定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本院의 判例(大法院 1976. 2.
28宣告, 66후 10 및 1964. 10. 22 선고

63후 45가 판결 參照)이므로 原審
決이 本件“가”號 說明書에 記載된
“디아제팜”이 製造方法은 비록 被
審判請求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 제
1595호가 위 實施例 1部와 그 技
術內容이 동일한 것이긴 하지만 위
“가”的 製造方法은 本件 特許의 출
원 이전에 國內에 頒布된 刊行物인
有機化學雜誌에 掲載되어 公知되게
된 것이므로 本건 特허의 권리범위
에 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은 正當하다.

그러므로 본건 特허의 16가지 실
시례 一部와 公知되지 않는 나머지
실례가 相互間에 淳然一體가 되
며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趣旨의
본원 1975. 12. 9 선고, 74年 24판결
참조)이들이 相互有機的으로 結合
된 것이며 아울러 본원의 판례들
과 見解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에는 위에서 본 판례들이 通用
될수 없다는 論旨が 채용될 수가
없다.

그리고 原審決이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디아제팜”的 제조방법이 위
美國의 有機化學誌에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음”이라고 지적하고 있
음은 通常의 知識을 가진 사람으면
이를 실시 할수 있는 정도로 수록되
어 있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 할 수가 있고 이러한 판단 또
한 정당한 것으로 認定되므로 이
點을 論難하는 論旨로 排斥될 수밖
에 없다.

그러므로 이 上告는 이유없음에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關與法官들의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

一参考

審決: 1972年 抗告審判 第125號, 抗告審判請求人 에프 호프만 라롯슈株式會社, 代理人 辩理士 이병호, 抗告審判被請求人 同和藥品工業株式會社 윤화일, 代理人 辩理士 전준항

위 當事者間에 行한 1971年 審判第30號(特許 第1595號 權利範圍確

認審判請求事件) 審決 不服抗告審判請求事件에 대하여 다음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主文: 本件 抗告審判의 請求는 成立할 수 없다. 심판 및 항고심판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결: 1971년 심판 제29호 및 동 제30호 併合, 심판청구인 同和藥品工業株式會社 대표이사 윤화일,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준항, 심판청구인 에프 호프만 라롯슈, 소송대리인 이병호.

위 당사자간의 특허 제1395호 및 1595호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특허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병합하여 다음 주문판 같이 심결한다.

주문: 「가」호 說明書에 기재된 “디아제팜(7-크로로-1-에틸-5-페닐-3-1,4-벤조디아제핀-2(1H)-온의 제조방법은 특허 제1395호 및 1595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심판비용은 심판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또 의장법 73조는 意匠權의 설정 등록후에는 그 의장에 관하여 特許廳職員에 대하여 默秘義務를 免除하고 있음이明白하다. 그러므로 제3자가 의장원부를 열람하는 것이不可能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의장원부는 모두 不特定人에게 열람이 가능한 對象이 되어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本件審決에는 X가 主張하는 것과 같은 違法의嫌疑는 없으므로 X의 本訴請求는 不當하므로서 秉却하며 訴訟費用에 대해서는 行政事件訴訟法 7條, 民事訴訟法39條를 適用하여 主文과 같이 판결한다.

7. 解說

본건의 爭點은 1963년 2월 20일에 출원한 실용신안이 이미他人의同一考案으로서 의장등록원부가 存在하나當時는 發刊되지 않았고 5個月 뒤인 8월 7일 이후에 간행되었으므로 公知性判斷을 할 수 없었다는 X의 提訴에 있다.

그러나 法院은 의장법 63조와 73조에 의거하여 利害關係人은 의장원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朴비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특허청지원으로부터 檢索하려는 品名에 屬하는 最新公報(未刊行)의 意匠登録番號를 물어 볼 수도 있다하여 公知性을 인정함으로써 無効審決을 正當化하였다. ¶

(國) (外) (事) (件)

未刊行登録原簿記載에 따른 無効原因

(日本東京高法 1972年行(件) 第124號審決 取消訴訟事件, 1976年1月 20日 民事第6部判決)

1. 原告:X

2. 被告:Y

3. 判決主文

原告의 請求를 秉却한다. 訴訟費用은原告의 負擔으로 한다.

4. 事件概要

X는 스터트머신球用計數器(以下 實用新案이라 함)의 權利者이다. 本件實用新案은 1963年 2月 20日에 登錄出願되어 64年 5月 22日 登錄되었다.

그러나 Y는 65년 12월 20일 特許廳에 대하여 X를 被請求人으로서 본전실용신안에 대해 登錄無効審判을 請求하여 67년 7월 13일 본전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審決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審決取消訴訟에 이른것이 本判決이다.

5. 審決理由

1962년 1월 29일에 등록출되어 동년 11월 13일에 등록되고 63년 8월 7일 意匠公報에掲載된 意匠登録129894號(以下引用例라 함)에는 본전실용신안과 同構造의 스터트머신

球用計數器가 表示된 것으로 認定된다.

따라서 本件實用新案法 3條 1項 1號에 該當하며 그 등록은 同法 37條 1項 1號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해야 한다.

6. 判決要旨

인용례는 1962년 11월 18일에 등록된 의장이지만 본전실용신안이 등록출원된 62년 2월 20일에는 그의장 공보는 刊行되어 있지 않으며 그 공보가 동년 3월 12일에 이르러 겨우 간행되었음은 當事者間に 다를 이 없다.

그러나 의장법 63조에 의하면 意匠權이 設定登録되었을 때는 누구도 그에 관하여 證明書類의 謄本이나 抄本의 交付, 서류의 교부, 서류 또는 模型이나 見樣의 열람, 謄寫 또는 意匠原簿중에서 磁氣帶프로세 複製한 部分에 記錄되어 있는 事項을 記載한 서류의 교부를 特許廳長에 대하여 청구할 수는 있게 되어 있다.